

제 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 【2014.9.15(월)】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안건 현황	2
1. 회계구분	2
2. 심사경과	2
II. 예산안 규모	3
1. 세입예산	3
2. 세출예산	4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5
1. 재정여건 및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5
2. 총괄개요	7
3. 세입예산안	9
4. 세출예산안	28
IV. 심사결과	49
1. 주요 질의 및 심사내용	49
2. 토론요지	50
3. 심사결과	50
4.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52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8. 13.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4. 9. 4.

라. 상정일자 : 2014. 9. 12.

- 제안설명 : 정책기획관 박윤국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II

예산안 규모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이전수입	2,572,430	2,589,284	-16,855	-0.7%
중앙정부이전수입	1,971,061	2,092,642	-121,580	-5.8%
보통교부금	1,905,262	2,079,791	-174,530	-8.4%
특별교부금	61,117	12,455	48,662	390.7%
국고보조금	4,683	395	4,287	1,085.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74,085	470,550	103,535	22.0%
법정이전수입	564,664	462,413	102,251	22.1%
비법정이전수입	9,421	8,137	1,284	15.8%
기타이전수입	27,284	26,093	1,191	4.6%
기타지원금	27,284	26,093	1,191	4.6%
자체수입	98,164	94,975	3,189	3.4%
교수-학습활동수입	85,855	85,855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54	554	0	0.0%
자산수입	4,577	1,631	2,946	180.6%
이자수입	4,660	4,660	0	0.0%
기타수입	2,518	2,275	243	10.7%
지방교육채	201,148	0	201,148	순증
전년도이월금	9,412	10,000	-588	-5.9%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유아및초중등교육	2,675,346	2,586,717	88,629	3.4%
1. 인적자원운용	1,563,001	1,527,852	35,150	2.3%
2. 교수-학습활동지원	135,662	107,574	28,088	26.1%
3. 교육복지지원	302,269	286,229	16,040	5.6%
4. 보건/급식/체육활동	73,858	56,233	17,626	31.3%
5. 학교재정지원관리	432,945	432,848	98	0.02%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7,610	175,982	-8,372	-4.8%
평생·직업교육	11,543	12,488	-945	-7.6%
7. 평생교육	11,493	12,438	-945	-7.6%
8. 직업교육	50	50	0	0.0%
교육일반	194,265	95,055	99,210	104.4%
9. 교육행정일반	20,901	21,020	-119	-0.6%
10.기관운영관리	15,320	16,477	-1,157	-7.0%
11.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4,761	54,276	100,485	185.1%
12.예비비 및 기타	3,282	3,282	0	0.0%

1. 재정여건 및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 GDP경제성장률(실질, 계절조정)이 1/4분기 0.9%인데 비해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2/4분기에는 0.6%로 성장률이 둔화된 후 3/4분기 이후에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소비자심리지수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1~6월중 국세수입 진도율(45.5%)이 전년수준(46.2%) 보다 0.7%p 하락하는 등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기전망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2014.9.1) >

- 이와 같은 기조로, 인천시 교육청의 가장 큰 세입 비중(약 77%)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또한 올해 국가 세수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해 내시액 보다 확정교부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예산반영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지방자치단체 법정·비법정 이전수입의 일부 반영, 그리고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 신·증설비와 저금리 차환으로 인한 지방교육채 편성 등 추경재원 부족에 따라 건축예산을 편성함.

-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정규직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초등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내시액 반영과 그에 따른 대응사업액을 편성함. 아울러, 건축재정을 위해 경상예산 및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하고 시설사업 재검토를 통한 이월예정 사업비 사전 감액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함.

2. 예산안 총괄개요

1) 총 규모

<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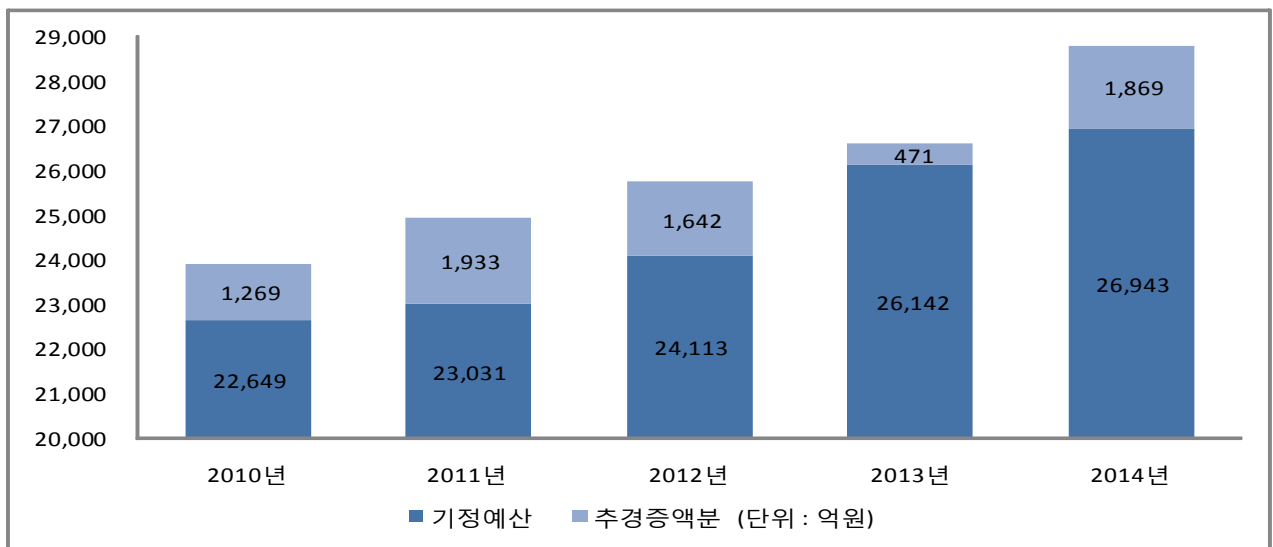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이하 같음)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기정예산		추경예산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2010년	2,264,941	11.0	2,391,812	5.1	5.6
2011년	2,303,097	1.7	2,496,438	4.4	8.4
2012년	2,411,307	4.7	2,575,548	3.2	6.8
2013년	2,614,191	8.4	2,661,284	3.3	1.8
2014년	2,694,260	3.1	2,881,154	8.3	6.9

* 추경예산 기준 : 2010~2013년 최종예산, 2014년은 추경예산안



2) 세입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1. 중앙정부이전수입	1,971,061	2,092,642	-121,580	-5.8%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74,085	470,550	103,535	22.0%
3. 기타이전수입	27,284	26,093	1,191	4.6%
4. 자체수입	98,164	94,975	3,189	3.4%
5. 지방교육채	201,148	0	201,148	순증
6. 전년도이월금	9,412	10,000	-588	-5.9%

3)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1. 인적자원운용	1,563,001	1,527,852	35,150	2.3%
2. 교수-학습활동지원	135,662	107,574	28,088	26.1%
3. 교육복지지원	302,269	286,229	16,040	5.6%
4. 보건/급식/체육활동	73,858	56,233	17,626	31.3%
5. 학교재정지원관리	432,945	432,848	98	0.0%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7,610	175,982	-8,372	-4.8%
7. 평생교육	11,493	12,438	-945	-7.6%
8. 직업교육	50	50	0	0.0%
9. 교육행정일반	20,901	21,020	-119	-0.6%
10. 기관운영관리	15,320	16,477	-1,157	-7.0%
1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4,761	54,276	100,485	185.1%
12. 예비비 및 기타	3,282	3,282	0	0.0%

3.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과목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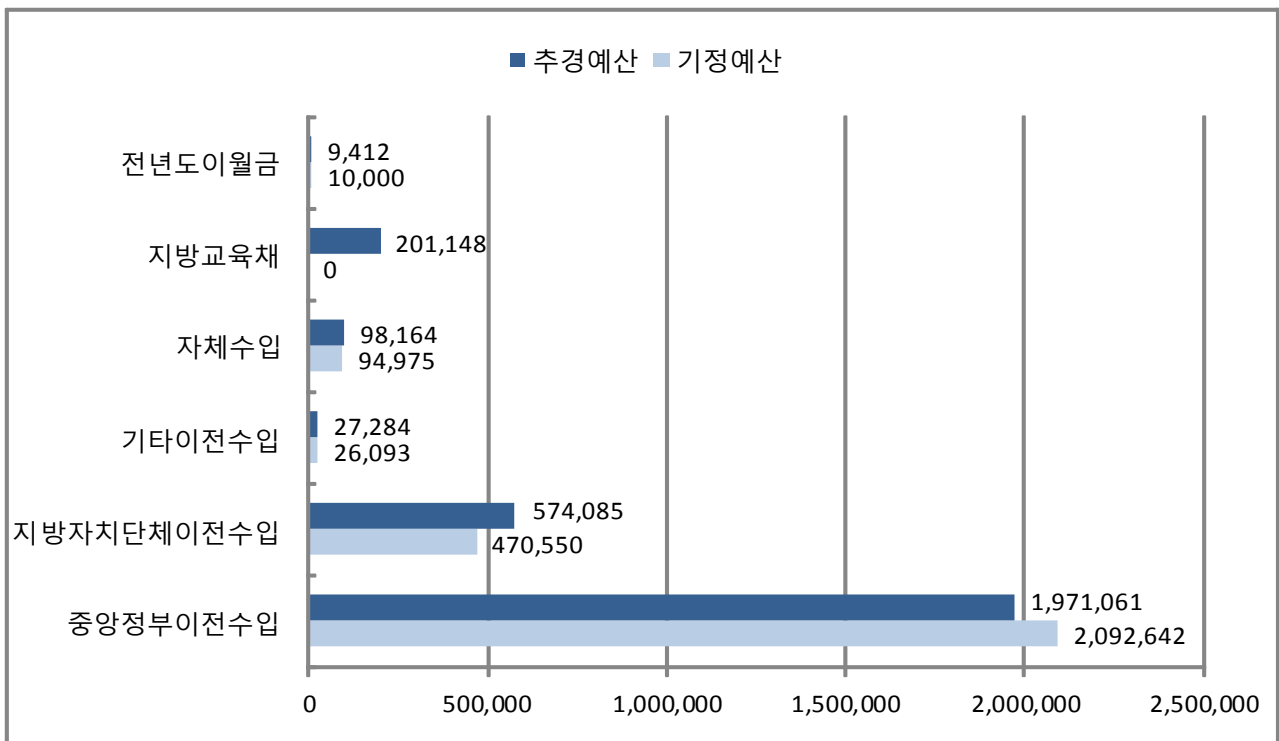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이전수입	2,572,430	2,589,284	-16,855	-0.7%
중앙정부이전수입	1,971,061	2,092,642	-121,580	-5.8%
보통교부금	1,905,262	2,079,791	-174,530	-8.4%
특별교부금	61,117	12,455	48,662	390.7%
국고보조금	4,683	395	4,287	1,085.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74,085	470,550	103,535	22.0%
법정이전수입	564,664	462,413	102,251	22.1%
비법정이전수입	9,421	8,137	1,284	15.8%
기타이전수입	27,284	26,093	1,191	4.6%
기타지원금	27,284	26,093	1,191	4.6%
자체수입	98,164	94,975	3,189	3.4%
교수-학습활동수입	85,855	85,855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54	554	0	0.0%
자산수입	4,577	1,631	2,946	180.6%
이자수입	4,660	4,660	0	0.0%
기타수입	2,518	2,275	243	10.7%
지방교육채	201,148	0	201,148	순증
전년도이월금	9,412	10,000	-588	-5.9%

-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2조 6,942억 6,000만원) 대비 6.9%인 1,868억 9,400만원 증액된 2조 8,811억 5,400만원을 편성 요구함.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2조 5,892억 8,400만원) 대비 △0.7%인 168억 5,500만원이 감액된 2조 5,724억 3,000만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949억 7,500만원) 3.4%인 31억 8,900만원이 증액된 981억 6,400만원을 편성 요청함.
- 지방교육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2,011억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100억원) 대비 △5.9%인 5억 8,800만원이 감액된 94억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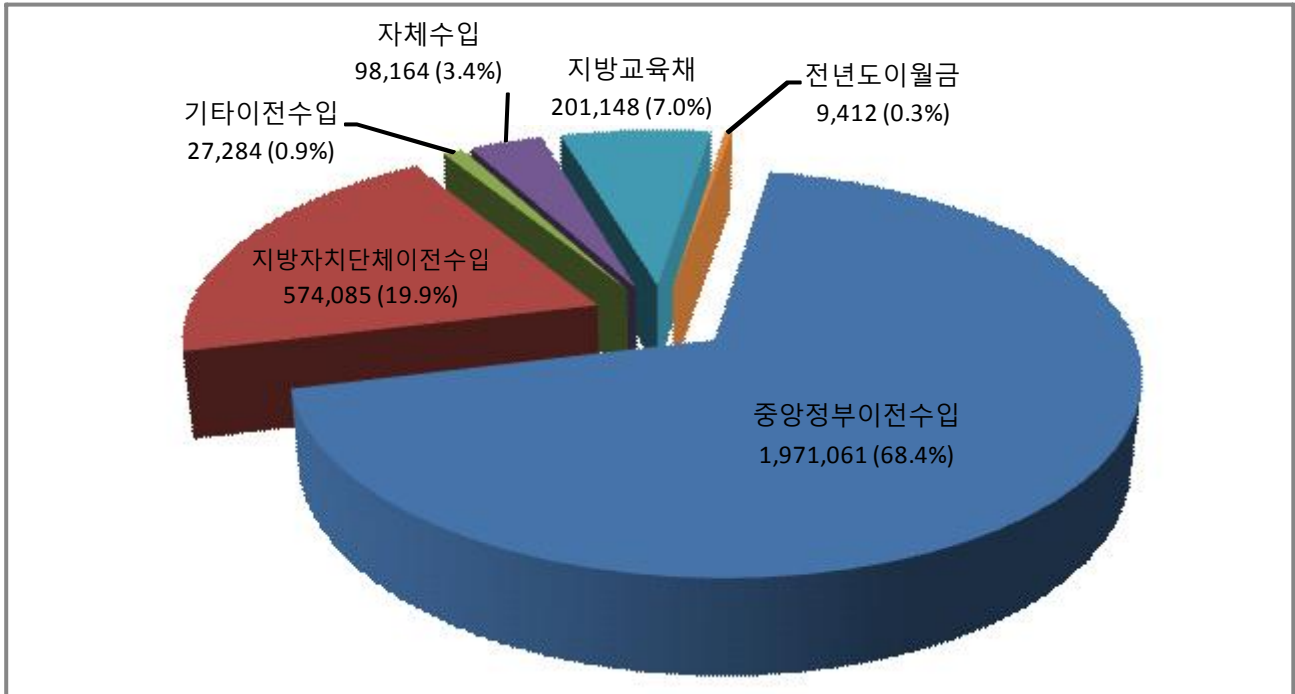
< 과목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68.4%로 기정예산(77.7%) 대비 $\Delta 9.3\%p$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19.9%로 기정예산(17.5%) 대비 $2.4\%p$ 증가하였음.
-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비중은 기정예산과 큰 차이가 없으며
- 지방교육채의 경우, 학교시설비에 따른 지방채와 고금리 차환채 발행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1억 4,800만원이 순증하여 총세입예산액 대비 7%를 차지함.

2) 중앙정부이전수입

2-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보통교부금	1,905,262	2,079,791	-174,530	-8.4%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1항에1)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써,
 -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 2조 797억 9,100만원 보다 1,745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보통교부금의 교부예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며, 매년 2월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확정교부 통지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2014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측정항목		2014년 교부액			
			교부액(예정) (A)	교부액(확정) (B)	증감 (B-A)	증감률
보통교부금 교부액 [지방채포함(5=3+4)]			2,046,761	2,005,210	-41,552	-2.0%
지방채 발행 (4)	1.지방채발행	가.공립학교 신설이전 증설비	107,472	96,682	-10,790	-10.0%
		나.공립유치원 신설 증설비	7,516	3,266	-4,250	-56.5%
		소 계	114,988	99,948	-15,040	-13.1%
보통교부금 교부액(3=1-2)			1,931,773	1,905,262	-26,512	-1.4%
기준재정 수요액 (1)	1. 교직원인건비		1,662,191	1,665,599	3,408	0.2%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358,860	365,423	6,563	1.8%
	3. 교육행정비		50,026	50,026	0	0.0%
	4. 교육복지지원		59,359	61,284	1,925	3.2%
	5. 학교시설비		63,310	83,516	20,207	31.9%
	6. 유아교육비		220,142	219,114	-1,028	-0.5%
	7. 방과후학교사업비		53,502	53,502	0	0.0%
	8. 재정결함보전		40,195	40,819	624	1.6%
	9.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소요액		8,454	11,709	3,255	38.5%
	합 계		2,516,038	2,550,991	34,954	1.4%
기준재정 수입액 (2)	1.지방세등 법정전입금	가.지방교육세	294,046	308,756	14,709	5.0%
		나.시도세	104,886	113,769	8,883	8.5%
		다.담배소비세	65,895	65,895	0.001	0.0%
		소 계	464,828	488,420	23,592	5.1%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116,263	116,263	0	0.0%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174	3,447	273	8.6%
4.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37,600	37,600	순증	
합 계		584,264	645,730	61,465	10.5%	

*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일(교육부→지자체) : 2014.4.18

- 금번 추경예산에서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2조 797억 9,100만원) 대비 △8.4%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실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은 당초 교부예정액(2조 467억 6,100만원) 대비 △2%인 415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2조 52억 1,000만원으로, 추경예산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보통

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정예산에는 지방채 발행분이 예정교부액인 관계로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분 999억 4,800만원을 별도 예산과목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에서 제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임.

-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예정액(5,842억 6,400만원) 대비 10.5%인 614억 6,500만원 증액된 6,457억 3,000만원이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예정액(2조 5,160억 3,800만원) 대비 1.4%인 349억 5,400만원이 증액된 2조 5,509억 9,100만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하면 1조 9,052억 6,200만원으로 265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음.
- 그 주요요인은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방세등 법정전입금'과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액'이 각각 235억 9,200만원과 376억원씩 증가되었고
- 지방채발행이 예정액에 비해 265억 1,200만원 감소된데 따른 것이며, 이는 국가 세수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해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보통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 보통교부금은 총액 배분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재원이나,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인해 그 산출기준 자체가 지출에 대

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항목을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보정계수³⁾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로 되어있어 산정공식이 지방교부세⁴⁾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바, 교육부는 보정계수 산정공식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측가능성 및 교육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정과제인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 확대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증대와 향후 고교 무상교육⁵⁾ 등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예측을

3) 보정계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을 보정계수로 함. 확실적인 기초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별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에 이를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음.

4)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정계수 산정공식을 명시하고 있음.
: 산정공식 = (해당 지자체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자체 측정단위수치) ÷ 단위비용

5)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정과제로서, 당초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재정 여건상 2015년이후 단계적 시행으로 조정(「2014년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14.2.)

< 고교 무상교육 시 소요재정 규모 추정 >

(기준:2012년 기준 소요비용으로 추정, 단위:억원)

구분	고교 무상교육 시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 포함 여부	
	포함할 경우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입 학 금 · 수 업 료	25,940	22,662
학 교 운 영 지 원 비	5,622	5,185
교 과 서 비	1,272	1,216
합 계	32,834	29,063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2013.7)

통해 추가 재정소요를 위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이를 위해 국가예비비의 지자체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 방식 등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건의하는 등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보통교부금 특징 》

-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자금성격 : 자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보조금
- 재 원 : 내국세 20.27%의 96/100 금액과 교육세 전액 합산
- 산정방식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
 - 기준재정수요액 :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text{기준재정수요액} = \sum \text{항목별 (측정단위수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보정계수)}$$

* 자세한 기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기준재정수입액 :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text{기준재정수입액} = \text{지방세 재원 전입금(100\%)} + \text{수업료 및 입학금(85\%)}^6 + \text{학교용지매입비용 일반회계 부담금(100\%)}$$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은 전국의 전년도 수업료·입학금을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산정한 지역별(특별시, 광역시, 도)·학교급별·계열별·급지별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입학금 기준액에 해당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의 85퍼센트를 산정함. 다만,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70퍼센트를 산정함.

2-2)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사업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특별교부금	216건	61,117 (45,770)	12,455	48,662	390.7%
국고보조금	7건	4,683 (3,143)	395	4,287	1,085.1%

* ()는 성립전사용예산임.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⁷⁾에 의거 특별한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교부금으로써, 교육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 편성이 늦어져 성립전사용예산⁸⁾으로 미리 편성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 성립전사용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금 457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 특별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 124억 5,500만원 보다 486억 6,200만원이 증액된 61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액 3억 9,500만원에서 42억 8,700만원이 증액된 46억 8,300만원이 편성됨.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4,085	470,550	103,535	22.0
법정이전수입	564,664	462,414	102,250	22.1
지방교육세전입금	311,763	276,415	35,348	12.8
담배소비세전입금	67,541	6,7541	0	0
시도세전입금	116,660	97458	19,202	19.7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31,100	21000	10,100	48.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⁹⁾	37,600	0	37,600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9,421	8,137	1,284	15.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520	8,137	383	4.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01	0	901	순증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4,705억 5,000만원 대비 1,035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5,740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4,624억 1,400만원에서 22.1%인 1,0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4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81억 3,700만원에서 12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 2,1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3억 8,300만원 증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9억 100만원이 순증하였음.

- 법정이전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육세전입금은 353억 4,800만원, 시도세전입금은 192억 2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10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2014년 지방소비세 확대(5%→11%)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으로 서울시에서 국고로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37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법정·비법정이전수입 시청/교육청 추경예산안 차액 발생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교육청			시청			차액 (2)-(1)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안(1)	증감액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안(2)	증감액		
법정 이전	시세	96,120	105,003	8,883	96,120	102,811	6,691	-2,192
	담배소비세	67,054	67,054		67,054	61,598	-5,456	-5,456
	지방교육세	277,909	292,618	14,709	277,909	266,590	-11,319	-26,028
	취득세보전분	0	30,958	30,958	0	30,958	30,958	0
	학교용지부담금	21,000	31,100	10,100	8,400	11,500	3,100	-19,600
	소계	462,082	526,733	64,651	449,482	473,457	23,975	-53,276
비법정 이전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0	2,000	2,000	2,000	1,000	-1,000	-1,000
합 계		462,082	528,733	66,651	451,482	474,457	22,975	-54,276

○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의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차액 발생내역을 보면 총 542억 7,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정이전수입의 차액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당해연도 법정 전출금과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보전분 등 △336억 7,6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분 △196억원이 시청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총 세입재원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법정이전수입에서의 세수결손은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며

< 2014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 중 시청 전입금 산정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측정항목		교부액(예정) (A)	교부액(확정) (B)	증감 (B-A)
기준재정 수입액	지방세등 법정전입금	가.지방교육세	294,046	308,756	14,709
		나.시도세	104,886	113,769	8,883
		다.담배소비세	65,895	65,895	0.001
		소 계	464,828	488,420	23,59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174	3,447	273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37,600	37,600
		합 계	468,001	529,467	61,465

- 앞서 설명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내역을 보면, 교육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시 시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등에 대해 614억 6,5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산정하여 그만큼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것으로 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¹⁰⁾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¹¹⁾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시와 교육청간의 법정 전출·입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533억원이라는 세수가 결손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차액발생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법정이전수입의 차이는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사업으로 시청 당초 예산에 동 예산액이 2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은 시청의 당초예산대로 20억원을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양 기관의 협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양측의 추경예산액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을 사료됨.

< 2014년 비법정이전수입 추경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9,420,500	8,136,500	1,284,000	15.8%
비 법 정 이전수입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	1,500,000	-	1,500,000	순증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2,000,000	-	2,000,000	순증
	과학예술영재학교토지매입비	250,000	3,500,000	-3,250,000	-92.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51,000	-	851,000	순증
	기타사업	4,819,500	4,636,500	183,000	3.9%

-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비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20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억 5,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과학예술휘재학교 토지매입비의 경우, 시청 비법정전입금 지원시기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전국연합학력평가시도분담금	2,200,000	2,200,000	-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892,937	892,937	-	-
도화지구이전재배치사업	23,000,000	23,000,000	-	-
전국소년체육대회	187,122	-	187,122	순증
2014년교육금고협력사업지원금	630,000	-	630,000	순증
인천교육사랑카드적립금	260,000	-	260,000	순증
아시아경기대회시설사용관리비	83,196	-	83,196	순증
기타사업	30,500	-	30,500	순증
계	27,283,755	26,092,937	1,190,818	4.6%

-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의 경우, 2014년 교육금고(농협)협력사업지원금으로 6억 3천만원, 인천교육사랑카드 적립금 2억 6천만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구월유치원 및 만월초교를 AG도평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관리비로 8,319만원과 그 외 3,0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5) 자체수입

< 자체수입 추경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세입 구분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579,869	382,495	197,374	51.6%
	자산매각대	토지매각	3,850,777	1,248,000	2,602,777	208.6%
		건물매각	145,499	-	145,499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450	450	-	-
		소계	3,996,726	1,248,450	2,748,276	220.1%
기타수입	기타수입		2,110,067	1,866,938	243,129	13.0%

- 자체수입의 경우, 자산수입 중 임대료수입은 서구영어마을 토지·건물 임대료 등으로 1억 9,73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서도초교아차분교 토지 매각 등 5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6%인 26억 277만원 이나 증액되었으며 양사초교북성분교와 서도초교아차분교 건물 매각으로 1억 4,549만원이 순증하였음.

6)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발행사유	지방채 구분	부담 주체	상환기간 (회계연도)		이율	차입선	발행 예정액	상환 계획
				기채 년도	상환완료 (예정)년도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2009년 기발행한 지방교육채차환(이자부담완화)	공공자금 관리기금 → 금융채	교육부	2009 → 2014	2024	4.85%(고정) → 미정(변동)	한국은행 → 시중은행	101,200	10년 원금 분할 상환
학교 신증설	교육부의 2014년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방침	금융채	교육부	2014	미정	미정(변동)	시중은행	99,948	미정 (교육부 추후 통보)
합 계								201,148	

- 지방교육채 추경예산 반영액은 2,011억 4,8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 세부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지방교육채를 1,012억원을 발행한 바 있으나 이율이 4.85%의 고정금리로 이를 저금리 차환채 발행을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학교신증설 지방교육채의 경우, 교육부의 「2014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방침」에 따라 999억 4,800만원을 발행하는 것임.

<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상환자원	상환조건	승인액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20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부금	4.85%(고정) 5년거치 10년상환	101,200	101,200	101,200	세수금 결손에 따른 교부금 보전
2012	인천체고제2훈련동 증축등3건	자체	3.60%(변동) 2년거치 3년상환	44,909	33,900	26,800	세수금 결손에 따른 차입
2013	학교신설비	교부금	3.60%(변동) 2년거치 3년상환	15,264	15,190	15,189	세수금 결손에 따른 교부금 보전
합 계				161,373	150,290	143,189	

* 현재 미상환액이 잔존하는 지방교육채에 한함

- 현재 지방교육채 미상환액이 1,431억 8,9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2009년과 2013년에 학교 관련 시설비 자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가 발행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1,163억 8,900만원이 남아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건으로 교육청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2년에는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3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육청 자체 지방교육채를 339억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268억원이 남아있어 향후 몇 년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채 사업별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자원	사업명	미상환액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												비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교 부 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101,200	0	4,908	10,120	4,784	10,120	4,306	10,120	3,803	70,840	12,804	101,200	30,605	'24년 상환 완료
	학교 신설비	15,189	0	547	0	547	5,063	493	5,063	319	5,063	136	15,189	2,042	'18년 상환 완료
	소 계	116,389	0	5,454	10,120	5,331	15,183	4,799	15,183	4,121	75,903	12,940	116,389	32,645	
자 체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등3건	26,800	0	965	8,933	884	8,933	562	8,933	241	-	-	26,799	2,652	'17년 상환 완료
합 계		143,189	0	6,420	19,053	6,215	24,116	5,361	24,116	4,362	75,903	12,940	143,188	35,298	

- 지방교육채 사업별 상환계획을 보면, 현재 원리금 총액은 원금 1,431억 8,800만원과 이자 352억 9,800만원이 포함된 총 1,784억 8,6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2014년 대비 상환액이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세출예산안

1) 세출예산안 총괄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81,154	2,694,260	186,894	6.9%
유아및초중등교육	2,675,346	2,586,717	88,629	3.4%
1. 인적자원운용	1,563,001	1,527,852	35,150	2.3%
2. 교수-학습활동지원	135,662	107,574	28,088	26.1%
3. 교육복지지원	302,269	286,229	16,040	5.6%
4. 보건/급식/체육활동	73,858	56,233	17,626	31.3%
5. 학교재정지원관리	432,945	432,848	98	0.02%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7,610	175,982	-8,372	-4.8%
평생·직업교육	11,543	12,488	-945	-7.6%
7. 평생교육	11,493	12,438	-945	-7.6%
8. 직업교육	50	50	0	0.0%
교육일반	194,265	95,055	99,210	104.4%
9. 교육행정일반	20,901	21,020	-119	-0.6%
10. 기관운영관리	15,320	16,477	-1,157	-7.0%
1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4,761	54,276	100,485	185.1%
12. 예비비 및 기타	3,282	3,282	0	0.0%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기정예산 대비 살펴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이 3.4%인 88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의 경우 △7.6%인 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일반'은 104.4%인 99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인적자원운용사업은 2014년 미편성했던 정규직 인건비, 교원 명퇴 수당,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35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체육교육 내실화, 학력신장, 교육과정개발 운영, 외국어교육, 특별활동 지원 등을 위해 2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인상분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으로 1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학 인건비의 재정결함 지원 등을 위해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과 환경개선사업의 이월예상금액 8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예산절감을 통해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선거관리 집행잔액과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혁신 등 예산절감을 통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저금리 차환 등을 위해 1,00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2) 신규 편성사업

< 신규사업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예산액	사업내용	재원	세세부 페이지
1	정책 기획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미래학교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미래학교운영비(80,000천원) - 운영비 등(20,000천원) ○국제화역량강화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역량강화사업지원(400,000천원) ○글로벌행복드림학교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행복드림학교운영비(120,000천원) ○국제화전담교원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원 연수(30,000천원) - 중등교원 연수(50,000천원) - 기타 운영비(20,000천원)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미래학교운영비(600,000천원) - 글로벌행복드림학교운영비(510,000천원) - 외국어열린센터운영(23,000천원) - 전담교원연수(50,000천원) - 청소년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50,000천원) - 국제화특구업무담당자 워크숍 및 협의회 등 (50,000천원) 	특별교부금	21
2	정책 기획관	수업개선을위 한 현장교육 지원	144,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형혁신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준비교지원금(60,000천원) - 사이버연수(50,000천원) - 혁신학교 준비교 컨설팅(9,780천원) - 혁신학교워크숍(11,940천원) - 혁신네트워크운영 등(9,040천원) ○권역별거점형혁신학교운영(1,945천원) ○교육혁신지구운영(1,695천원) 	자체	25
3	교육 과정 기획과	외국어체험캠 프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문화체험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해외연수 여비 14명(21,000천원) - 인솔교사 해외연수 여비 2명(4,000천원) 	기타이전수입 (NH농협은행 인천시교육청 출장소)	202
4	교육 과정 기획과	기숙사증축 (덕신고)	54,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숙사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54,374천원) 	특별교부금	221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예산액	사업내용	재원	세세부 페이지
5	정보 직업 교육과	사이버학습운영	150,000	○사이버학습운영지원 - 모바일러닝 기반구축 공동분담금(100,000천원) - 지역특화모델운영비(50,000천원)	특별교부금	290
6	교원 정책과	비정규직관리	8,000	○교원행정업무경감 - 지역교육청 연수운영비(6,700천원) - 본청 연수운영비(1,300천원)	특별교부금	331
7	학교 설립 기획과	자율형사립고 지원	500,000	○ 인천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비법정전입금 (인천시)	429
8	교육 시설과	기타시설 (여름철취약 시설보수)	90,000	○여름철취약시설보수 - 가정고 구조안전진단용역(5,000천원) - 가정고 교사2동계단실 구조보강(45,000천원) - 인천여상 옹벽보수(25,000천원) - 학생교육원 석축보수(15,000천원)	특별교부금	514
9	교육 시설과	학교에너지진 단용역	12,800	○학교에너지진단용역실시 - 초(3교): 백학초 외 2교 - 중(4교): 만수북중 외 3교 - 고(1교): 해양과학고	특별교부금	516
10	북부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	80,022	○부내초다목적강당증축 - 설계비(80,022천원)	특별교부금	103
11	북부 교육 지원청	기타시설 (학교시설증 개축)	666,714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 -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일부편성 (666,714천원)	비법정전입금 (인천시)	105
12	동부 교육 지원청	냉난방시설개 선	141,000	○연수여고냉난방시설개선 - 냉난방시설교체(19실)	특별교부금	166
13	서부 교육 지원청	가정여중축구 부휴게소증축 (기타시설)	242,000	○가정여중축구부휴게소증축 - 설계비(11,066천원) - 시설비(230,934천원)	특별교부금	228
계			4,117,310			

○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세세부사업기준으로 총 13건 41억 1,731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9건 27억 8,120만원, 시청 비법정이전수입 사업 2건 11억 6,671만원, 교육청금고(NH농협은행) 기타이전수입 사업으로 1건 2,500만원, 자체재원사업 1건 1억 4,440만원임.

- 인천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5억원(시청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인천하늘고는 자율형사립고로 ‘인천공항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협약서’ 등을 근거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 당시 학교 법인에서 부담할 설립지원비를 2013년에 교재교구비로 45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여 지적된 바 있어 본 사업의 경우도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은 6억 6,671만원(시청 비법정이전수입)으로, 2016년까지 미산초교 미활용 부지 활용을 통한 체육·문화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총 사업비 176억원중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과 수년도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향후 사업비 투자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사업은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혁신학교 운영 준비를 위한 경비 1억 4,440만원을 편성한 것임.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여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고, 또한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 의무절감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주요 증액사업

< 주요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자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1	정책기획관	교원인건비	976,215,364	1,001,400,457	25,185,093	2.6	자체예산	본예산 미편성 금액 일부 추가 편성	19
2	정책기획관	다문화가정자녀지원	703,429	1,057,939	354,510	50.4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및 기타이전 수입	29
3	정책기획관	학부모지원	212,588	425,198	212,610	100.0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60
4	창의인성 교육과	사교육의존도 완화지원	4,636	231,636	227,000	4896.5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86
5	창의인성 교육과	수업개선을위 한현장교육지 원	192,335	556,125	363,790	189.1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90
6	창의인성 교육과	특수교육진로 직업	1,061,869	1,339,895	278,026	26.2	특별교부금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부금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인건비추가 확보	103
7	창의인성 교육과	특수교육운영 지원	21,940	255,836	233,896	1066.1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106
8	창의인성 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147,497	888,393	740,896	502.3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117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9	창의인성 교육과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5,291,218	5,454,098	162,880	3.1	자체예산	치료지원 소요액 감소, 방 과후교육활동비 대상자 증가	122
10	창의인성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1,429,410	3,180,410	1,751,000	122.5	특별교부금 기타전입금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 부금사업, 교육금고협력사업비지원	133
11	창의인성 교육과	효교육	189,674	322,674	133,000	70.1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39
12	창의인성 교육과	진로교육과정 운영	2,000,342	2,735,429	735,087	36.7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42
13	창의인성 교육과	초등방과후보 육프로그램운 영	12,819,148	17,351,148	4,532,000	35.4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 사업계획에의한 특 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돌봄교실 운영비 확보	150
14	교육과정 기획과	교육과정편성 운영	179,710	1,042,810	863,100	480.3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61
15	교육과정 기획과	기타교육과정 지원	8,676	118,276	109,600	1263.3	특별교부금	교육부 시책사업계획에 의 한 특별교부금 사업	170
16	교육과정 기획과	인정도서개발 보급	94,141	258,068	163,927	174.1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72
17	교육과정 기획과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2,154,527	6,052,619	3,898,092	180.9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75
18	교육과정 기획과	기타학력향상 지원	98,010	243,810	145,800	148.8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79
19	교육과정 기획과	중등학교평가 전문성제고	82,005	400,565	318,560	388.5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예산절감	182
20	교육과정 기획과	연구시범학교 지원	124,760	537,260	412,500	330.6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87
21	교육과정 기획과	영재교육운영	1,805,222	1,948,222	143,000	7.9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91
22	교육과정 기획과	원어민교사및 보조강사운영	14,464,840	17,403,085	2,938,245	20.3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자체예산 감액	197
23	교육과정 기획과	영어교육활성 화	527,310	1,166,740	639,430	121.3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Talk장학생자체예산절감	199
24	교육과정 기획과	과학교육진흥	1,053,306	2,042,506	989,200	93.9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208
25	교육과정 기획과	대입전형안내 상담교사단운 영	240,063	346,063	106,000	44.2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예산절감(△32,000천원감 액)	213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26	교육과정 기획과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지원	971,298	2,246,836	1,275,538	131.3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217
27	평생교육 체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	7,000	119,000	112,000	1600.0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227
28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체육활성 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6,048,212	10,118,668	4,070,456	67.3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및국고보조금교부 사업	229
29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소년체육 대회	1,055,800	1,428,934	373,134	35.3	특별교부금 기타이전수 입	특별교부금및기타이전수입교 부사업	256
30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정신건강 관리강화	142,652	293,391	150,739	105.7	자체	학생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대상 학생 증가	247
31	정보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취업 역량강화	488,931	2,364,391	1,875,460	383.6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 부금사업, '13년국고보조금반납	285
32	정보직업 교육과	사이버학습운 영	0	150,000	150,000	순증	특별교부금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 부금사업	290
33	정보직업 교육과	ICT활용교수 학습활성화	9,131	1,185,558	1,176,427	12883.9	특별교부금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 부금사업	292
34	정보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 금지원	9,878,444	18,496,297	8,617,853	87.2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 부금사업 (3:7대응투자사업)	302
35	교원정책 과	명예퇴직수당 (공립교원)	10,044,000	11,925,674	1,881,674	18.7	자체예산	명예퇴직 신청인원 증가로 명예퇴직수당 예산 증액	315
36	교원정책 과	기타직보수	82,333,763	89,156,991	6,823,228	8.3	자체예산	기간제 교사 평균 채용 인 원 증가와 평균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반영	317
37	학교생활 안전지원 과	다문화가정자 녀교육지원	7,634	628,634	621,000	8134.7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343
38	학교생활 안전지원 과	학교폭력예방	1,099,468	3,067,601	1,968,133	179.0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346
39	학교생활 안전지원 과	대안교육운영	2,137,162	2,690,514	553,352	25.9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359
40	학교생활 안전지원 과	Wee프로젝트 운영	4,123,458	6,355,106	2,231,648	54.1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364
41	총무과	기타직보수	2,331,992	3,014,494	682,502	29.3	자체예산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및 인 력관리합리화 계획에 따른 인건비 인상	385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42	복지재정과	교원법정부담금	177,947,827	179,505,065	1,557,238	0.9	자체예산	명예퇴직교원수의증가(75명)로 인해 4분기 부담금 증액	449
43	복지재정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880,013	6,052,777	172,764	2.9	자체예산	-저소득층자녀학비감면신청인원 308명 증가 -사립외고,자사고학비인상및지원인원 7명 증가	453
44	복지재정과	농어촌전원학교지원	1,466	2,031,466	2,030,000	138472	특별교부금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	455
45	복지재정과	회계관리	13,803	273,803	260,000	1883.6	기타이전수입	인천교육사랑카드적립금 사업 신규 추진	462
46	복지재정과	지방교육채이자상환	6,865,566	107,961,558	101,095,992	1472.5	자체예산	-지방교육채차환에따른납부일수증가로 이자 증액 -일부상환및이자율변동으로감액 -지방교육채원금상환으로증액	470
47	정보지원과	통합시스템운영	415,366	622,708	207,342	49.9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행재정통합시스템유지관리 낙찰차액감액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부금사업	477
48	정보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97,575	420,614	123,039	41.3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예산절감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부금사업	482
49	교육시설과	학교증축	650,502	884,758	234,256	36.0	자체	영흥고 타절준공에 따른 잔여공사 완료를 위하여 사용한 인천당산초 교사증축 예산 확보	512
50	남부교육지원청	무상급식비지원	4,057,959	6,059,524	2,001,565	49.3	자체예산	무상급식비평균단가인상분및교육청 부담금반영	37
51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비정규직인건비	4,019,457	4,492,797	473,340	11.8	자체예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각종수당 반영	39
52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5,542,885	7,373,295	1,830,410	33.0	자체예산 (△204,590천원) 특별교부금 (2,035,000천원)	○낙찰차액에따른집행잔액감액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교부금사업	48
53	북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940,000	2,172,601	232,601	12.0	비법정전입금+자체	부평구 비법정 전입금 내역편성 및 처우개선 내역 반영	90
54	북부교육지원청	무상급식비지원	3,775,462	5,769,466	1,994,004	52.8	자체	무상급식비평균단가인상분및교육청부담금반영	93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55	북부교육 지원청	학교급식비정 규직인건비	3,772,261	4,205,710	433,449	11.5	자체예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각종 수당 반영	95
56	북부교육 지원청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2,768,035	4,300,927	1,532,892	55.4	특별교부금 +자체	갈산중 급식실 현대화 사업 비(특교 1,399,000천원), 급 식기구 이전비 반영	98
57	북부교육 지원청	기타시설(학 교 시설 증 개 축)	0	666,714	666,714	순증	비법정전입 금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 립 설계비 반영	105
58	북부교육 지원청	기타시설(교 육환경개선)	2,129,957	2,662,212	532,255	25.0	특별교부금 +자체	사업 집행 잔액 및 낙찰차 액 감액 반영, 특별교부금사 업(부일초 화장실개선, 개흥 초 외벽개선) 반영	107
59	동부교육 지원청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2,501,000	3,101,000	600,000	24.0	비법정전입 금	남동구청, 연수구청 사업비 지원	149
60	동부교육 지원청	무상급식비지 원	6,590,815	9,530,435	2,939,620	44.6	자체	무상급식비평균단가인상분및 교육청부담금반영	151
61	동부교육 지원청	학교급식비정 규직인건비	5,982,855	6,724,049	741,194	12.4	자체예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각종 수당 반영	153
62	동부교육 지원청	기타시설	142,440	1,670,440	1,528,000	1072.7	특교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한 특 별교부금 사업	162
63	서부교육 지원청	무상급식비지 원	6,685,431	10,097,623	3,412,192	51.0	자체예산	무상급식비평균단가인상분및 교육청부담금반영	216
64	서부교육 지원청	학교급식비정 규직인건비	6,594,749	7,297,227	702,478	10.7	자체예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각종 수당 반영	218
65	서부교육 지원청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300,000	2,947,382	2,647,382	882.5	특별교부금	○학교급식실조리실작업별구 획(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미구분 학교 지원 ○기타시설개선이시급한초 중 고등학교 지원	221
66	서부교육 지원청	가정여중축구 부휴게소증축 (기타시설)	0	242,000	242,000	순증	특별교부금	원거리통학학생선수의학습공 간및휴게공간확보함으로써 체육특기학생들의교육환경개 선	228
67	서부교육 지원청	냉난방시설개 선	2,161,440	2,607,584	446,144	20.6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230
68	강화교육 지원청	무상급식비지 원	214,109	373,442	159,333	74.4	자체예산	무상급식비평균단가인상분및 교육청부담금반영	263
69	강화교육 지원청	학교급식비정 규직인건비	1,788,945	1,979,355	190,410	10.6	자체예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각종 수당 반영	265

○ 주요 증액사업 내역으로 보면,

- 교원인건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일부 추가 편성을 위해 251억 8,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 중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한해 우선 지원하던 사업을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중 희망학생 모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단체프로그램비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돌봄교실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30억 7,500만원과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해 14억 5,700만원(특교+자체)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총 45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173억 5,114만원이 편성되었음. 향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으로 사업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명예퇴직수당과 교원법정부담금은 각각 18억 8,167만원과 15억 5,723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연금개혁 예정에 따른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급증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신청자가 477명에 소요예산액이 7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신청자 일부만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명예퇴직 미수용자의 학교 재적응 문제와 교직사회 전반의 사기 및 근무의욕 고취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전국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요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상급식비 지원비는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30%, 시군구 70%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이번 추경예산 증액은 무상급식비 평균단가 인상분 및 교육청 부담금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671만원(5개 교육지원청 합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연도별 무상급식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별	평균단가(원)	지원규모		소요예산액
		학교수	학생수	
2012	2,140	238	65,318	19,611,724
2013	2,350	241	158,774	20,124,086
2014	2,470	242	156,422	추경액 31,830,490 (본예산 21,323,776)

4) 주요 감액사업

< 주요 감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1	공보담당관	교육시책홍보	302,650	170,800	-131,850	-43.6%	자체	예산절감	76
2	창의인성교육과	수석교사제운영	472,160	347,360	-124,800	-26.4%	자체예산	수석교사 선발인원 감소로 인한 연구활동비 감액	94
3	창의인성교육과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600,000	326,000	-274,000	-45.7%	자체예산	원비 동결 유치원 수 감소	101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4	교육과 정기회 과	고등학교입학 전형관리	861,500	746,760	-114,740	-13.3%	특별교부 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예산절감(△169,740천원감 액)	215
5	교육과 정기회 과	교과교실제운 영지원	9,078,128	8,024,128	-1,054,000	-11.6%	특별교부 금 자체예산	○교육부사업계획에의한특별 교부금사업 ○교과교실제1교선정취소및운 영비지원 단가 조정 감액(△ 1,100,000천원)	219
6	평생교 육체육 과	기타시설	4,348,760	3,948,760	-400,000	-9.2%	자체예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2014 시설비 감액	260
7	정보직 업교육 과	초중고학생교 육정보화지원	2,582,782	2,382,718	-200,064	-7.7%	자체예산	예산절감	305
8	총무과	지방공무원교 육훈련	473,360	320,970	-152,390	-32.2%	자체예산	예산절감	388
9	총무과	선거관리	10,603,088	9,909,460	-693,628	-6.5%	자체예산	선거기간 동안 소송 소청 사 유 미발생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정산에 따른 감액	394
10	행정관 리과	비정규직관리	1,127,044	1,003,325	-123,719	-11.0%	자체예산	예산절감	187
11	행정관 리과	공무원단체지 원	607,582	216,382	-391,200	-64.4%	자체예산	예산절감	201
12	복지재 정과	교직원복지대 여이차보전	277,464	144,576	-132,888	-47.9%	자체예산	-본예산편성인원보다감소한 신청건에 따른 감액 -교육부의사업중단으로인해 2014.7월이후 신규 대여자 이자지원 중단	451
13	복지재 정과	학교신설토지 매입비	16,157,433	13,170,460	-2,986,973	-18.5%	비법정전 입금 자체예산	-송도5초확정측량에의한토지 매입면적 감소에 따른 감액 -송도2초조성원가인상및확정 측량에의한 토지매입면적 증 가에 따른 증액 -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시비 법정전입금 지원 시기 변경에 따른 감액	458
14	교육시 설과	학교이전재배 치	27,646,977	27,176,554	-470,423	-1.7%	자체	계속비(2년차)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예산액 감액	507
15	교육시 설과	학교신축	73,854,348	69,561,600	-4,292,748	-5.8%	자체	계속비(1년차)집행시기조정(1 년차→2년차)으로계속비이월 발생예산액감액	509
16	교육시 설과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36,935,221	36,526,597	-408,624	-1.1%	자체	시설임대료사업수익률조정에 따른시설 임대료 감액	518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17	교육시 설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10,475,159	10,273,159	-202,000	-1.9%	자체	예상물가상승율과실제물가상 승율차이에 따른운영비감액	521
18	남부교 육지원 청	사립유치원교 원처우개선지 원	2,324,880	2,207,196	-117,684	-5.1%	자체예산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교원수 및 학급수 감소	12
19	남부교 육지원 청	교육환경개선 사업	5,450,731	4,929,155	-521,576	-9.6%	자체예산	○교육환경개선공사 - 백학초(△521,576천원) - 사유 :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57
20	북부교 육지원 청	냉난방시설개 선	2,303,700	1,509,595	-794,105	-34.5%	특별교부 금+자체	낙찰차액 감액	112
21	동부교 육지원 청	사립유치원교 원처우개선	4,404,850	4,082,756	-322,094	-7.3%	자체	지급대상 교원수 감소로 인 한 감액	286
22	동부교 육지원 청	교육환경개선 사업	5,062,807	249,929	-4,812,878	-95.1%	특교+자 체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인하여 감액	164
23	서부교 육지원 청	유아교육지원	159,000	48,000	-111,000	-69.8%	자체	기존방과후과정반을 일반학 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 시설비 감액	186
24	서부교 육지원 청	사립유치원교 원처우개선지 원	3,496,600	3,296,600	-200,000	-5.7%	자체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교원수 감소로 인한 처우개선비 감 액 및 신설유치원 및 기존유 치원 정원 미충족에 따른 학 급 수 감소로 인한 학급당임 수당 감액	188
25	서부교 육지원 청	다목적강당	2,766,810	2,606,203	-160,607	-5.8%	자체예산	○검단초다목적강당및급식실 증축 - △160,607천원 - 준공완료에 따른 낙찰차 액 감액	223
26	서부교 육지원 청	기타시설	2,005,907	1,828,343	-177,564	-8.9%	자체예산	○ 집행잔액 감액	225
27	교육과 학연구 원	학생과학관운 영	1,251,861	1,086,138	-165,723	-13.2%	자체예산	- 과학관해설사인건비 증액 - 낙찰차액 감액 및 예산절 감	24
28	교육과 학연구 원	사이버학습운 영	895,573	739,603	-155,970	-17.4%	자체예산	예산절감	33
29	인천교 육연수 원	교원연수지원	1,116,388	964,268	-152,120	-13.6%	자체예산	예산절감	73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본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재원	증감사유	세세부 페이지
30	인천교 육연수 원	기관공통경비	1,391,438	1,198,999	-192,439	-13.8%	자체예산	예산절감	103
31	학생교 육문화 회관	기획공연및전 시	1,274,240	1,082,748	-191,492	-15.0%	자체예산	예산절감	122
32	학생교 육문화 회관	문화예술교육	598,438	496,541	-101,897	-17.0%	자체예산	예산절감	127
33	학생교 육문화 회관	기관공통경비	1,251,866	1,128,377	-123,489	-9.9%	자체예산	예산절감	138
34	학생교 육원	기타각종활동 지원	683,837	478,358	-205,479	-30.0%	자체예산	예산절감	151
35	평생학 습관	평생학습관운 영	1,449,653	1,337,273	-112,380	-7.8%	자체예산	-학점은행제신규사업에따른 강사료및 운영비 등 증액 -사업집행완료에따른잔액및 예산절감액	191

○ 주요 감액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중 9%의 유치원만이 운영비를 동결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운영비를 본예산의 △45.7%인 2억 7,4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지원유치원수('11 : 221개소 → '12 : 162개소 → '13 : 59개소 → '14현재 : 22개소)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업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할 것임.
- 학교시설토지매입비는 본예산 대비 △18.5%인 29억 8,697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감소사유는 송도2초 조성원가 인상 및 확정측량에

의한 토지매입 면적 증가에 따른 2억 6,310만원 증액과 과학예술영재 학교 시청 비법정전입금 지원 시기 변경에 따라 △3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두 개교 모두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유아교육지원(서부교육지원청)은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원 감액되어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운영에 따른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지원비로, 기존 방과후 과정반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비를 감액하는 것임.

5) 법적·의무적 경비 등 미반영

<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 미반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총 소요예산	기정 예산액(A)	추경 예산액(B)	증감액 (B-A)	미반영 액	반영 률	사유	확보계획
정규직 인건비	정규직원 급여	1,463,648	1,428,448	1,457,072	28,624	6,576	99.5	교육청 재원 부족	2회 추경시 확보 노력
누리과 정지원	3~5세 유아학비지원	209,137	190,495	190,495	-	18,642	91.1	교육청 재원 부족	2회 추경시 확보 노력

-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으로 각 사업별 개별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201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 재원부족으로 인해 정규직인건비는 반영률이 97.5%, 누리과정지원은 91.7%로 교육청 재원부족을 이유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규직인건비만 일부 반영된 것으로 증액분 반영시 총소요액의 99.5%를 충족하게 되며 누리과정지원의 경우엔 본예산 보다 총소요예산은 증가했으나 추경증가분이 없어 오히려 반영률이 하락한 것임.

- 법적·의무적 경비는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업 대상자로서 하여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시청으로의 전출금 현황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청으로의 전출금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최종예산액	전출액	미전출금	미전출률	미전출사유	전출계획
방과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29,232	-	29,232	100.0	2013년 지원금 60,900,000원 중 17,678,630원의 집행잔액 발생 시에서 9월 추경 후에 반납 예정	인천시청 2013년 집행잔액 반납완료 후 전출예정
누리과정지원	83,941,440	6,994,940	76,946,500	91.7	시청 법정전입금 미전입	시청의 법정전입금 전입상황에 따라 전출 예정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2,340,000	1,026,540	1,313,460	56.1	하반기 지원금 미전출	10월 하반기 지원금 전출 예정
계	86,310,672	8,021,480	78,289,192	90.7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청으로의 전출금 현황을 보면 총 3개사업비 863억 1,067만원 중 현재까지 782억 8,919만원이 미전출되어 90.7%의 미전출률을 보이고 있음.
- 방과후어린이집보육료지원은 2,923만원의 사업비로 만12세이하 차상위계층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생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시청이 60.9 : 39.1의 비율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시청 전출금은 전무한 상황으로, 교육청에서는 동사업에 대한 지난연도 집행잔액인 1,767만원을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반납완료시 전출할 계획에 있음.
- 누리과정지원사업 또한 시청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라 전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전출률이 91.7%에 달해 시청의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양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시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조속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기 특별교부금 사업 중 세입·세출예산 불일치 사업

< 특별교부금 사업 중 세입·세출예산 불일치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예산편성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특별교부금 내시액	추경예산				특교 구분	비고
				세입 반영액	세출				
					반영액	미반영액	반영률		
교육과정 기획과	덕신고기숙사 증축	덕신고 기숙사 증축 설계비	1,901,000	1,901,000	54,374	1,846,626	2.9	지역현안	계속비 사업
북부 교육지원청	부내초다목적 강당증축	부내초 다목적 강 당 증축(설계비)	2,479,000	2,479,000	80,022	2,398,978	3.2	지역현안	..
동부 교육지원청	논곡초다목적 강당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설계비	1,231,000	1,231,000	51,000	1,180,000	4.1	지역현안	..
계			5,611,000	5,611,000	185,396	5,425,604	3.3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고 되어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표 3건의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액 전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2014년 설계비인 3.3%만 반영하는 등 과소 편성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동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당해연도 내에 대부분의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특정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예산을 일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타사

업에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 나머지 사업비 충당에 대한 부담을 다음해로 넘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 보통교부금은 '2014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기준'(교육부, '14.3)에 따라 2년 내 사용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산의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허용되는 것이라 사료되며 당해목적 사업비는 세입과 세출액을 일치시켜 당해사업에 대한 안정성 및 재정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저소득층자녀 지원

< 연도별 저소득층자녀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비고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학비 지원	예산	6,617,331	7,345,521	5,880,013	6,052,777	172,764	
	실적	○학교운영지원비지원 - 공립고 4,488,429천원 - 사립고 1,765,116천원 ○사회적배려대상자학비지원 - 인천외고, 인천하늘고 277,358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 공립고 4,670,059천원 - 사립고 1,735,327천원 ○사회적배려대상자학비지원 - 인천외고, 인천하늘고 432,428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 공립고 3,787,200천원 - 사립고 1,446,048천원 ○사회적배려대상자학비지원 - 인천외고, 인천하늘고 514,326천원			
중식비 지원	예산	26,570,361	28,075,380	24,455,976	24,455,976	-	
	실적	43,653명	43,966명	33,615명			
방과후 학교자유 수강권 지원	예산	14,784,000	11,362,393	11,880,000	11,880,000	-	
	실적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제물포고외426교,57,801명)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제물포고외437교,54,540명)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2014.08.1현재. 제물포고외429교,38,719명)			
정보화 지원	예산	2,613,974	2,670,299	2,582,782	2,382,718	-200,064	
	실적	pc지원:600명 (1대당1,000천원) 인터넷통신비지원: 월평균9,000명 (1인당월18,700원)	pc지원:363명 (1대당825천원) 인터넷통신비지원: 월평균10,300명 (1인당월19,250원)	pc지원:150명 (1대당1,330천원) 인터넷통신비지원: 월평균9,200명 (1인당월19,250원)			통신비 2차 추가산정 9월여정
계 4건	예산	50,585,666	49,453,593	44,798,771	44,771,471	-27,300	

-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은 4건으로 본예산액 447억 9,877만원 대비 △ 2,730만원이 감소한 447억 7,147만원을 편성하였음.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비감면 신청인원이 늘어 이번 추경예산에 1억 7,276만원을 증액하여 60억 5,27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2~2013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감소한 것임.
- 중식비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액 그대로인 244억 5,597만원으로 이또한 2012~2013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감소한 것임.
- 방과후 학교지원은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118억 8,000만원으로 추경예산 증감내역이 없음. 이는 2013년도 지원액에 비해 4.5% 증가한 액수이긴 하나 2012년도에 비하면 △20% 가까이 감액된 액수임.
- 정보화지원 사업은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e-Learning 등의 활용을 위한 교육환경지원 통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액 25억 8,278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2억 6만원 감소하여 23억 8,2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2~2013년도 예산규모와 비교시 △10.8%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특성상 지원규모 변경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꼭 필요한 예산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주요 질의 및 심사내용

- 교육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혁신학교 운영사업에 대해 시의회 및 학부모·학생 등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였음. 내실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부계획 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임. 또한, 혁신학교 추진시 학력저하 등의 문제점이나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 세입예산 중 지방소비세 확대분인 157억원에 대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동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전입·전출금을 일치시키고 법정전입금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법적 의무경비로 향후에는 당해 연도 인건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교장 공모를 통한 교장 선임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임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응모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장 자격증을 갖춘 인물 등 경력을 중시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 명예퇴직 신청자에 비해 수용률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명예퇴직 미수용자의 학교 재적응 문제와 교직사회 전반의 사기 및 근무의욕 고취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수용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국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침해 및 회계처리 등의 부담으로 유치원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비 증액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 바람.

2. 토론요지

- 찬성 : 없음
- 반대 : 황인성, 최석정, 박종우, 손철운,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제갈원영
위원

3.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8명]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심사요구액	위원회 증감액		심사결과예산액
		감액	증액	
세입예산 계	2,881,153,870	△54,275,974	0	2,826,877,896
지방교육세전입금	35,348,256	△26,028,293	0	12,374,895
담배소비세전입금	-	△5,455,800	0	9,319,963
시도세전입금	19,202,613	△2,191,881	0	△5,455,800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10,100,000	△19,600,000	0	17,010,732
비법정이전수입 (원어민교사인건비)	2,000,000	△1,000,000	0	△9,500,0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심사요구액	위원회 증감액		심사결과예산액
			감액	증액	
세출예산 계		2,881,153,870	△54,841,794	565,820	2,826,877,896
정책기획관	공립교원인건비	25,185,093	△25,185,093	0	0
평생교육체육과	인천체고 수영장, 체육관 증축	△400,000	△2,460,701	0	△2,860,701
복지재정과	강화여중토지매입비		△4,288,178	0	△4,288,178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교원성과상여금		△1,959,784	0	△1,959,784
정책기획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2,245,292	0	△2,245,292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241,972	0	△241,972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3,780	0	△33,780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265,918	0	△265,918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114,675	0	△114,675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83,532	0	△83,532
정책기획관	인천형혁신학교운영	144,400	△144,400	0	0
창의인성교육과	혁신학년공모운영 혁신동아리공모운영	363,790	△101,480	0	262,310
평생교육체육과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자료개발	△10,951	0	6,420	△4,531
정보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0	150,000	150,000
남부교육지원청	도화초 창호공사		0	300,000	300,000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cctv화질개선	△109,400	0	109,400	0
복지재정과	누리과정지원	△2,798	△15,707,203	0	△15,710,001
정책기획관	예비비		△2,009,786	0	△2,009,786

4.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에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인천형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시청과 교육청 간 법정전입·전출금 불일치 금액 중 지방소비세 확대분인 15,707,203천원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정리추경 시까지 양측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음.